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1, 117∽132.
DOI:https://10.22987/jifso.2025.16.1.117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김 영 규* 이 재 웅**

백석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 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우리 민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고(제55조, 제58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는 규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역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제40조, 제41조)는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능력 및 공시송달 관련 규정의 부재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주요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경과규정

* 주저자: 김영규/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E-mail: llkyk@bu.ac.kr
** 교신저자: 이재웅/서울사이버대학교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교수/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Tel: 02-944-5041/E-mail: jwlee@iscu.ac.kr

Ⅰ. 서론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가결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형식과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를 무효와 취소의 원인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의사표시에 대한 독립적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 민법의 태도는 북한이 1993년, 1999년, 2007년 등 세 차례에 걸친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에 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방식과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각각의 모습 및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먼저 민사법률행위의 개념과 유효조건(제28조, 제43조), 의사표시 방식(제39조) 등 '의사표시 일반'에 대해서 2024년 개정 전 민법과는 달리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제55조), 본질적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제49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제47조),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제48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해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40조), 의사표시의 철회(제418조)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에 있어서 의사표시제도는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보다 체계적이며 동시에 계약을 비롯한 법률행위를 보다 잘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방식 등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검토한 후, 이를 전제로 통일 민법에서 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수용 및 그 한계를 밝히고 필요한 경과규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의사표시 일반

1. 법률행위의 개념 및 방식과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은 '법률행위의 형식'에서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의 개념 및 방식을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41조)[1]과 1986년 중국 민법통칙(제54조)[2]을 계수한 것으로서(최달곤, 1998),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이론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법률사실인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사회주의 생활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민법사전, 1997). 이는 1990년 북한이 민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종래 북

1)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인 1964년 러시아 민법은 그 제41조에서 "법률행위는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공민과 기관의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의 해석과 관련해서 구소련 민법이론은 법률행위에 대해, 행정문건이나 자연적 사실과 달리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2) 1986년 중국 민법통칙(제54조)은 '민사법률행위'에서 "민사법률행위는 공민 또는 법인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합법적 행위이다."라고 규정하다.

한의 민법이론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법률사실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모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도구라는 해석에 터 잡은 것이다(민법1, 1973).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8조) 역시 '법률행위의 정의'에서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이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과 같이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를 가져오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9조)은,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이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의 개념 및 방식을 한 개의 조문에서 같이 규율한 것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방식에 대해 법률행위의 개념과 별도로 독립한 조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개정에서도 개정전 민법(제4조)에서와 같이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을 민법의 기본원리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의 본질을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도구라는 본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방식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 단서)은 '의사표시의 방식'을 법률행위의 개념과 함께 다루면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었다. 위 규정은 1964년 러시아 민법(제42조 제1항)이 의사표시의 방식에 대해서 "법률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서면 자체에 의한 것과 공증에 의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본받아 구두와 서면 또는 공증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 단서)에서 의사표시를 구두가 아닌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로는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획적 계약을 들 수 있고,[3]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부동산거래계약 등을 들 수 있었다.[4]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9조)은 '의사표시의 방식'을 법률행위의 개념과 독립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면서 "의사표시는 말이나 글 또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침묵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하였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동의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개정전 북한 민법(제24조 단서)과 달리 '침묵'이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 등도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9조)은 개정 전 민법(제24조 단서)과 달리, 의사표시의 방식으로서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과 '침묵'을 명시하는 것은 1964년 러시아 민법(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이 의사표시의 방식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일지라도 사람의 태도로 보아 그 의도가 나타나면 그대로 한 것으로 본다. 침묵은 소련과 러시

3)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93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대해서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고 규정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계획적 계약(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서면의 방식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4)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94조)은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해서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은 공증의 방식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아공화국의 입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의사표시로 본다."고 한 규정을 계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9조)은 '의사표시의 방식'으로서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을 규정한 것은 표의자(행위자)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것으로 의제하는 '포함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침묵을 인정하는 것(제39조)은 의사표시로 평가될 만한 일정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9조)은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말, 서면, 공증 이외에 포함적 의사표시와 침묵 등도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유효조건과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효력요건과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서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4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당사자와 목적(내용)과 구별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과 공민인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희망하는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민사법사전, 1997). 그리하여 개정 전 북한 민법(제26조 제2항, 제28조)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5)]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조 제3호)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인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서 "의사표시가 진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6)] 이는 1986년 중국 민법통칙 제55조를 계수한 것이다.[7)]

(2)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 의사표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조 제3호)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의사표시가 진실할 것'을 요하며, 여기서 의사표시가 진실하지 못함으로 유효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모습은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불일치한 것과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일치하지만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불일치한 의사표시(의사의 흠결)에 대해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제55조), 본질적 착오

5) 결함 있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6조 제2항, 제28조)상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고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에 해당한다.

6)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조)은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서 "민사법률행위가 유효하자면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행위자가 해당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의사표시가 진실해야 한다. 4. 법이 정한 의무적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1986년 중국 민법통칙(제55조)은 '민사법률행위의 실질적 조건'에서 "민사법률행위는 다음 각호 1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행위자가 상응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부합될 것, 3. 법률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말 것"이라고 고 명시하고 있었다.

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제49조)를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일치하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제47조),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제48조)로 각각 독립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3.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 일반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한 요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8조)은 개정 전 민법(제24조) 및 북한 민법이론과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인 법률사실로 보면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통설과 그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또한, 개정 전 민법(제24조 단서)과 달리,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과 '침묵'을 명시한 것(제39조)은 우리 민법의 통설이 의제된 의사표시와 침묵을 인정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이밖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3조)이 당사자 및 목적과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명시하면서 '의사표시가 진실할 것'을 요하는 것도 의사표시가 하자(사기, 강박)없이 진실하게 일치할 것을 요하는 우리 민법의 통설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하다.

(2) 수용의 한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조)은 개정 전 민법(제4조)과 동일한 태도로,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과 국가와 사회의 이익 우선보장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본질을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 본다. 또한, 개정 민법은 개정 전 민법(제4조)과 동일하게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칙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제3조)을 병존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이 사적 자치를 자본가계급이 공권력의 간섭없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민법에서의 행위개념은 행위자가 의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개념이 되지 못하는 단서가 되어 왔다. 그런데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역시도, 사적 자치의 실천 도구인 의사표시를 계획적인 재산거래, 국가와 사회의 이익 우선을 통한 중앙집권제 원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위 원칙 아래에서만 의사표시를 통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극복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이며 우리 민법이나 통일 민법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Ⅲ.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불일치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사의 흠결)

(1)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허위의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6조 제2항)은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무효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8] 이는 1964년의 러시아 민법(제53조 제1항)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 없이 다만 겉으로만 행위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는 규정을 계수한 것으로서,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와 통정하지 않은 단독허위표시(진의 아닌 의사표

시)를 모두 포함하는 '허위적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다루는 것이다(김영규, 2016). 이에 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내심의 의사 없이 순전히 겉으로만 하는 법률행위로서 표의자가 미리 상대방과 통하고 했거나 통하지 않고 했어도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민사법사전, 1997).

또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7조 본문)은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의 무효의 효과에 대해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고 규정하여 허위적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이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7조 단서)은 특수한 부당이득인 불법원인급여의 대상에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9]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5조)은 허위표시에 대해, 개정 전 민법(제26조 제2항)이 다른 무효인 행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과 달리,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에서 통정허위표시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즉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상대방과 공모하여 형식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여 상대방과 위법한 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공모한 허위표시에 대해서 무효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제55조 전문).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행위의 허위성을 알고 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여 상대방과 공모하지 않고 한 단독허위표시에 대해서 무효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제55조 후문). 여기서 허위적인 의사표시의 예에 대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손해배상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거짓으로 매각하는 행위(민사법, 1997)나 위법적인 국가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를 교환의 방법으로 하는 행위 및 재산몰수를 기피할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높은 가격으로 파는 행위(최덕성, 2015)를 들고 있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8조)은 무효인 허위표시(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민사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규율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의 효과가 미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진의아닌 의사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제3자로 상징되는 거래의 동적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보인다(김영규, 2017).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9조 제2항)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민사법률행위,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은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함으로서 개정 전 민법과는 달리,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를 특수한 부당이득인 불법원인급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룸으로써 단순히 급부자에 대한 반

8) 2024년 개정 전 북한 민법(제26조 제2항)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9) 2024년 개정전 북한 민법(제27조 단서)은 무효로 인한 이행 중 부당이득반환의 예외와 관련해서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의 대상에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환청구 부인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49조)[10]과 1986년 중국 민법통칙(제61조 제2항)[11]을 계수한 것이다. 이는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불법이 아닌데도(곽윤직, 김재형, 2020; 송덕수, 2020; 양형우. 2021; 김영규, 2019).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불법원인급여로 다룬다는 점에서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정치성이 개입되는 북한 민법의 단면을 보여준다.

(2) 본질적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에 대해서 다른 취소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12] 여기서 착오의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내용'은 1964년 러시아 민법(제57조)의 태도를 계수한 것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에 주요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구소련 및 북한의 민법이론은 제거될 수 없거나 당사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되, 사회와 집단의 이익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민법1, 1973; 민사법사전, 1997; 김영규, 2019).

또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9조 본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고 규정하여 착오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이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본질적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라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민사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본질적 착오를 범하여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착오를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민사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본질적 착오'라고 함은 앞에서 본 1964년 러시아 민법(제57조) 및 구소련 및 북한의 민법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조)은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와 관련해서 "본질적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미 주고받은 물건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착오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이행에 대해 개정 전 북한 민법(제29조 본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

10) 1964년 러시아 민법(제49조)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에 대해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주의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서 의식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법률행위를 당사자 쌍방이 알면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이행에 의하여 그들이 취득한 것은 모두 국가가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무효의 원인으로 이행한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수익자가 아닌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소련 민법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수익이 국가·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Братусь, Садиков, 1982).

11) 1986년 중국 민법통칙(제61조 제2항)은 '민사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후의 법률효과'에서 "쌍방이 악의적으로 통모하여 민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집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쌍방이 취득한 재산은 국가, 집체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국가에 몰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었다(野村好弘, 淺野直人, 1987).

12) 2024년 개정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북한 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서,[1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던 종래 북한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한 취소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109조 제1항 단서)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의사와 표시가 외형상 일치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에 대해서 다른 취소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이론은 속임수는 착취와 억압이 횡행하는 개인주의를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집단주의에 따르는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허용될 수 없음에도 낡은 사상의 찌꺼기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간혹 나타나게 된다고 강변해왔다(최덕성, 2015). 이에 따르면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취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9조 단서)은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이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이행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배제함은 물론이고 그 급부를 수익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58조 제3항)[14]을 계수한 입법으로서 개인관계에서의 의사표시를 통치관계의 수단으로 삼아 규율하는 북한 민법의 단면을 보여준다(김영규, 2016).

또 개정 전 북한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110조)과 달리 상대방이 한 사기와 제3자가 한 사기에 따라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고, 또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라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상대방에게 속히워서 한

13) 2024년 개정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착오 일반에 대해서 다 취소권을 주지 않고 본질적 착오만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민사거래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참가하는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민법사전,1997; 최덕성, 2015). 그러나 개정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의 최소의 효과와 관련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14) 1964년 러시아 민법(제58조 제3항)은 사기, 폭행, 협박 등의 의사표시로 인한 이행과 관련해서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의 이행의 대가로 피해자가 받게 될 모든 것은 국가에 몰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표의자가 상대방의 속임수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동일하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우리 민법(제110조)의 규정과는 달리, 상대방이 한 사기와 제3자가 한 사기에 따라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자가 사기자인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거나 유과실인 경우에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처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개정 전 민법(제29조)과 동일하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속인 자가 한 이행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15]

(2)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강요로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에 대해서 다른 취소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 전 북한 민법(제29조 단서)은 '강요로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이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강요한 자가 한 이행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부정하여 급부자에게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같이 1964년 러시아 민법(제58조 제3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의사표시제도를 통치관계로 규율하는 모습이다. 또 개정 전 북한 민법(제28조)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110조)과 달리, 상대방이 한 강박과 제3자가 한 강박에 따라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 라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폭행, 협박 또는 행위자가 위험에 처한 기회를 리용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강요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 어긋나게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제110조)에 따른 폭행, 협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물론이고 행위자가 위험에 처한 기회를 이용하여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사표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취소의 원인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제47조).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도 개정 전 민법과 동일하게 여전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과 관련한 우리 민법의 규정(제110조)과는 달리, 상대방이 한 강박과 제3자가 한 강박에 따른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으며, 제3자가

15) 다만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로 이루어진 이행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개정전 민법(제29조)이 상대방을 속여서 한 이행인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래와 달리 속히운 자'(사기당한 자)가 한 이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어야 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자인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 또한 없다.

그리고,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0조 제2항)은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에 있어서,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강요당한 민사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제외이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개정 전 민법(제29조)과 동일하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강요한 자가 한 이행(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몰수적 효과를 부여하여 그러한 위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상을 개조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존중시하는 집단주의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자극과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최주광, 2016)

3.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한 요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 제45조, 제50조 제2항)이 개정 전 민법(제29조)과는 달리,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이 둔 것은 우리 민법(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2) 수용의 한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개정 전 민법(제28조)과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표의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입법 태도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5조, 제46조)은 개정 전 민법(제28조)과 동일하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제110조)과는 달리, 상대방이 한 사기 또는 강박과 제3자가 한 사기 또는 강박에 따른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자가 사기자 또는 강박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이는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단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8조)은 무효인 허위표시(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의 효과가 미치도록 명시하고, 이로 인한 이행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로 다루어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모두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어 거래의 동적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동시에, 허위표시 자체를 국가가 개입하여 다루는 통치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은 개정 전 민법(제29조)과 동일하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속인 자(사기자), 강요한 자(강박자)가 한 이행(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

환청구를 배제함은 물론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58조 제3항)을 계수한 입법인데, 의사표시제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룸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범한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신영호, 1990).

이 밖에 북한 민법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개인주의를 생활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잔재(殘滓)라고 하면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북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가장 개인적이어야 할 의사표시제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김영규, 2024).

Ⅳ. 2024년 개정 북한 민법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개정 전 북한 민법은 일반제도(총칙)에서 우리 민법(제111조-제113조)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해서 규율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비롯해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공시송달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① 말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글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에 해당 전자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기타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광고와 같이 특정한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은 종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到達主義), 요지주의(了知主義) 등의 입법주의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각 모습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1항, 제3항)이 '말(구두)로 한 의사표시'와 '기타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을 규정하는 것은, 도달된 표의자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요지주의'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2항)이 '글(서면)로 한 의사표시'와 '전자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을 규정하는 것은,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또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5항)이 광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해당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외형을 완성한 표의자가 발송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신주의'의 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2항)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효력발생시기와 다르게 발신·도달 등 당사자가 특약한 시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철회

개정 전 북한 민법(제90조 제2항)은 일반제도(총칙)가 아닌 채권채무제도(계약)에서 제의(청약)와 승낙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의(청약)의 비철회성(구속력)을 규율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은 일반제도(총칙)에서 ‘의사표시의 철회’라는 조문 제목에서 “①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철회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북한의 민법이론은 손해의 전보(塡補)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잘못을 고치도록 자극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최주광, 2016).

위와 같이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명시하는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의 태도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 원칙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6] 또 이와 함께 의사표시가 일단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아직 숙지(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보인다.[17]

3.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의 수용과 한계

(1) 수용 가능한 요소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2항, 제4항)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도달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111조 제1항과)과 궤(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법과의 접근을 높여주는 동시에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가 된다.

또한, ‘말’과 ‘기타의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요지주의를 취하고, 광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명문규정(제40조 제1항, 제3항, 제5항)을 두고 있는 것도 수용을 검토할 만한 입법적 요소이다.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1조)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우리 민법(제111조 제1항과) 및 통설(곽윤직, 김재형, 2020; 송덕수, 2020; 양형우, 2021; 김영규, 2024)[18]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 보다 근접되며 동시에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

16)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80조)도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인 ‘제의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 “제의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17)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78조)은 ‘제의(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제40조의 ‘① 의사표시의 철회’와 같은 맥락에서 “제의를 한 당사자는 제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의를 철회하는 통지는 제의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18) 우리 민법(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통설도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늦어도 먼저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일단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아직 숙지(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수용의 한계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1조)이 의사표시의 철회와 관련해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표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철회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대해서 북한 민법은 손해의 전보(塡補)보다 법적 제재를 통해 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자극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19] 이는 북한의 민법이론이 손해배상제도(민사책임제도)에 대해서 민사관계의 당사자들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실현함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김경직, 2016)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관련해서도 사회주의적 정치색을 강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된다.

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서 우리 민법(제112조, 제113조)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불비로서 북한 의사표시제도의 단순성을 보여 주는 점이다.

Ⅴ. 결론: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

1.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경과규정의 필요성

이상에서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방식 등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전제로 통일 민법에서 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수용 및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 일반에서 의사표시의 방식을 명시하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서 발생시기·의사표시의 철회를 규율하는 등 종래 북한 민법이 가지는 의사표시제도의 한계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법무부, 2015; 김영규, 2016, 2019).[20]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여전히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64년 러시아 민법과 1986년 중국 민법통칙을 계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표시에 따른 이행에 대해 종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로 다루어 국고로 몰수하는 등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에 기초해서 남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는 통일 민법에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2. 의사표시 일반과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불가결 구성요소인 법률사실임을 명시하는 것(제38조),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기타 방법'(의제된 의사표시)과 '침묵'을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제39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의사

19) 이는 북한 손해배상법(제1조)이 민사관계의 당사자인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과 공민에 대한 규제(제도와 질서)를 통해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 종래 북한 민법에서 의사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한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주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새로이 신설한 규정들은 종래 북한 민법에서 의사표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들로 평가할 수 있다.

표시가 진실할 것'을 명시하는 것(제43조)은 우리 민법과 그 궤(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의사표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조, 제4조)은 개정 전 민법(제4조)과 동일한 태도로, 의사표시의 본질을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과 국가와 사회의 이익 우선원칙에 따라 중앙집권제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의사표시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한계점이자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3.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7조, 제45조, 제50조 제2항)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다른 무효와 취소의 원인으로 함께 규율하고 있던 개정 전 민법과 달리, 각각 별도의 독립된 조문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며,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롭게 두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 민법(제28조)과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제47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110조)과 달리, 상대방이 한 사기·강박과 제3자가 한 사기·강박에 따라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제3자가 사기자·강박자인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을 전제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제45조, 제46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인 허위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고, 절대적 무효로 다루는 것(제55조, 제58조)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의 동적 안전을 무시한 태도로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제107조-제110조)의 규정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둠이 타당하다.

또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및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이행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로 다루어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남북한 민법 통합에 대한 한계를 보인다. 이는 사적 자치의 근간이 되는 의사표시제도가 결코 통치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 민법에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달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도달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 제2항, 제4항),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명시한 것(제41조)은 우리 민법(제111조 제1항)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또한 개정 북한 민법(제40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말'과 '기타의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요지주의를 취하고, 광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112조, 제113조)과 달리,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불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통일 민법에서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밖에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1조)이 의사표시의 철회에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율하면서 손해의 전보(塡補)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삼아, 제재를 통해 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자극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김재형 (2020).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312, 330-331.

김경직 (2016). 민사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법. 2016/3,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55.

김영규 (2016).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2), 158-160, 163, 173.

김영규 (2019). 민법총칙(제3판). 진원사, 344, 368.

김영규 (2019).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3(3), 254.

김영규 (2024).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법률행위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48(2), 1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1973).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02, 110, 114.

법무부 편 (2015).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261.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1997).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233, 239, 401-402, 616, 637, 687, 802.

송덕수 (2020). 민법총칙(제5판). 박영사, 270, 330.

신영호 (1990). 북한 가족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98.

양형우 (2021). 민법의 세계(제13판). 도서출판 정독, 207.

정향심 (2016). 민법상 허물의 분류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원 학보, 2016(2), 사회과학출판사, 26.

최달곤 (1998).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54, 56.

최덕성 (2015).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르는 법적 효력.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률, 2015(1),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114-115.

최주광 (2016).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허위적인 행위와 그 법적 효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법률, 2016(3),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98.

野村好弘, 淺野直人(1987). 中國民法の硏究, 學陽書房, 40-41.

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1982). К *оммента 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 ексу РСФСР,* Юр идическа я литер атура, Москва, § 1, par. 3-4, § 49, par 4, § 57, par 2.

투고일자: 2024. 12. 26.
심사일자: 2025. 1. 24.
게재확정일자: 2025. 2. 4.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1, 117~132.
DOI:https://10.22987/jifso.2025.16.1.117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Declaration of Intent System in Revised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Youngkyu Kim Jaewoong Lee

Baekseok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claration of intent system in the 2024 revision of North Korea's Civil Law and evaluates its potential integration into a unified civil law framework. The revised code defines the declaration of intent as a legal crucial for juristic acts (Article 38), acknowledges silence as a form of intent (Article 39), and mandates truthfulness for validity (Article 43), in alignment with South Korean law. However, Articles 3 and 4, which treat intent as a tool for centralism, should be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ransitional provisions. Concerning abnormal declarations, Article 50, paragraph 2, which protects third parties acting in good faith, is worth adopting. Nevertheless, deficiencies in addressing mistakes, fraud, duress, and collusive declarations necessitate the application of South Korean Civil Law (Articles 107-110)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through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51, paragraph 2, and Article 58, paragraph 2, redirecting unjust benefits to the state, should also be repealed. Finally, the revised code introduces the principle of intent effectiveness upon arrival (Article 40) and the withdrawal of intent (Article 41), both of which are viable for inclusion in a unified civil law framework. However, provisions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capacity and public delivery of intent must be supplemented through transitional provisions.

KeyWord: revised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declaration of untrue intention,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when declaration of intention takes effect, transitional provisions.